

예술인 정책과 예술인의 개념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팀장

우

리 말 가운데 예술인을 나타내는 단어만 해도 수없이 많다. 우선 '예술인(藝術人)'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술가(藝術家)'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家)'는 "그 방면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작가',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연출가', '안무가', '성악가', '연주가'라는 용례를 보이고, '-인(人)'은 특별한 가치 개념 없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미술인', '문학인', '무용인', '연극인' 등 장르 전체의 관계지를 총칭할 때 사용된다.

예술인 정책과 예술계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를 총칭할 때는 '예술인'을, 주로 작품의 창작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칭할 때는 '예술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자(者)나 '수(手)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자(者)'는 명사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수(手)'는 명사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직업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휘자', '작곡자', '연기자', '연주자'나 '가수', '무용수', '고수(鼓手)' 등의 용례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배우(俳優), 성우(聲優), 소리꾼, 명창(名唱), 그리고 최근에는 '예술감독'이나 '기술감독', '탤런트' 등도 사용되고 있다. 그 어느 것이나 집단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의미가 강하게 묻어 있어 모든 예술인의 직업 활동이 개인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을 지칭할 때 '-가'나 '-수'가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례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예술의 역사가 오래고, 또 20세기 들어서 전혀 다른 양식의 서양예술이 유입되었는가 하면, 미디어예술 등 새로운 종류의 예술 장르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그 일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직능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예술인'의 사전적 정의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예술인'은 "예술가를 달리 일컫는 말"로서 '예술가'와 동의어로 되어 있다. 또한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술가'라는 국어사전의

의미 규정을 따르면, 예술 작품의 창작이나 표현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artist’ 를 “직업이나 취미로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창작하는 사람(someone who draws or paints pictures or creates sculptures as a job or a hobby)” 또는 “소설, 시, 영화나 그 밖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될 만한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a person who creates novels, poems, films, or other things which can be considered as works of art)”^{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HarperCollins Publishers, 1995, p.84.}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 특별히 ‘미술가’ 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개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예술가’란 용어는 한 마디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처럼 사전적 의미로는 그 개념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예술인의 정의가 그 개념이 적용되는 실제, 즉 외연적 의미를 확인해 보면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앞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만큼이나 예술인의 실제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우선 ‘예술’, ‘작품’, ‘창작’, ‘표현’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예술의 역사가 말해 주듯 ‘예술’의 외연적 내포적 의미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고, ‘작품’의 경우에도 그림이나 조각과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를 지닌 것 외에도 무형의 퍼포먼스가 있는가 하면, 생활용품과의 경계 또한 불명료하여 ‘예술인’의 외연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게 된다.

우선 ‘예술’의 외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에 관한 정의에서 제시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10장르를 공식적인 장르 구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악을 음악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미디어예술이 들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 제기가 될 만하다. 그렇지만 크게는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그리고 응용예술이라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장르는 시대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작품’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조각처럼 물리적으로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도록 보존되거나, 소설, 시, 악곡, 영화처럼 매체를 통해서 그 텍스트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연극이나 연주처럼 어느 순간에만 존재했다가 소멸되는 형태의 것도 있다. 최근에는 문학과 조형예술, 조형예술과 공연예술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곧 예술가에

▶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의 속성만큼이나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게 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시업 예술인의 개념 정의를 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예술인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만들어 법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 정의를 본격화하려는 법 시점에서 그 사전 작업으로 예술인 정리의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개념과 그 적용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작' 이라고 하는 행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 생산의 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예술의 생산(창작)과 소비(감상), 그리고 유통(보급)의 세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예술인' 은 예술 작품의 생산(창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술 작품의 유통(보급)을 담당한 매개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예술인' 의 개념은 매개자를 제외한 생산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술 생산자는 작가나 화가, 작곡가 등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예술가' 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등의 실연자(眞演者)와 그 실연(眞演)을 지휘·감독하는 연출가, 지휘자, 감독 등이 있다.

이는 1971년 뉴욕시 문화국이 '예술가증명서' 를 발급하면서 사용했던 '창조적 예술가'(creative artist)와 해석적 예술가(interpretive artist)라는 구분법과 유사하다. 뉴욕시의 '예술가증명서' 란 예술인 가운데 제조업 성격에 가진 '창조적 예술가' 에게만 제조업 전용지역 내 주거형 스튜디오 개선을 허용하면서 발행했던 것이다.

다소 도식적이지만, 이상에서 검토한 예술인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참조

<표> 예술인의 개념과 그 유형의 분류

구 분	명 칭	작 품	행위 유형	텍스트 유형
창작 예술가	조각가	조각	창작(조각하기)	유형(고정)
	화가	그림	창작(그리기)	유형(고정)
	소설가	소설	창작(글짓기)	무형(고정)
	시인	시	창작(글짓기)	무형(고정)
	극작가	희곡(대본)	창작(글짓기)	무형(고정)
	작곡가	악곡	창작(작곡)	무형(고정)
실연 예술가	배우	연극	실연(연기)	무형(유동)
	연주자	연주	실연(연주)	무형(유동)
	가수	연주	실연(가창)	무형(유동)
	무용가	무용	실연(무용)	무형(유동)
	연출가	연극	연출	무형(유동)
	지휘자	연주	지휘	무형(유동)
	영화감독	영화	연출	무형(고정)
	무대장치가	무대장치	디자인	유형(유동)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는 예술작품의 창조자, 실연자(창조적 표현의 제공), 그리고 제창조자를 모두 예술인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직업적 경력이나 사회적 인정에 상관없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른 주관적 의식에 기초하여 예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인 개념 정의의 사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의 속성만큼이나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도 새삼 예술인의 개념 정의를 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예술인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만들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그 사전 작업으로 예술인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개념과 그 적용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유네스코나 프랑스, 캐나다 등 입법화를 통해 예술인 정책이 구체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사례에서 제시된 예술인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인의 개념 문제가 갖는 함의를 따져보는 것이다.

1)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1980)

창립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유네스코는 예술인의 권리에 대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오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ILO와 함께 직업인(노동자)으로서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문제로 관심 방향을 전환하였다. 각국 예술인의 노동환경 및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수준(또는 그 이상의)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판단하고, 1980년 제21차 총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를 채택한다.

이 권고는 유네스코 회원국 각각의 상이한 사정을 고려하되,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요한 지위 이 권고에서 '지위'라고 하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한 사회에서 예술인에게 요청되는 역할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앞에서 정의한 예술인에 대해 부여되는 존중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여 예술인이 누리야만 하는, 특히 소독과 사회보장에 관계되는 여러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와 권리를 입법을 통해 보장해 주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의 주된 내용은 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전제로 예술인의 고용조건, 창작환경, 생활환경 등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서는 이 권고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개념의 정의

이 권고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창조적 표현을 제공하거나 또는 재창조하는 사람, 예술적 창조를 자기 삶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고용되어 있거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II 적용의 범위

이 권고는 예술인에 의해 실행되는 예술의 분야나 형태에 관계없이 앞의 제1장 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된다. 이는 '세계저작권협약' 과 '문학 및 예술적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에서 규정한 모든 창조적인 예술인과 작가만이 아니라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에서 규정한 실연자와 번역가를 포함한다.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1/001114/111428mo.pdf>

예술작품의 창조자, 실연자(창조적 표현의 제공), 그리고 재창조자를 모두 예술인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직업적 경력이나 사회적 인정에 상관없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의식에 기초하여 예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세계저작권협약' 과 '베른협약', 그리고 '로마협약' 에서 제시된 창작자와 작가, 실연자, 그리고 번역가를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 '권고' 의 예술인 개념이 다소 유연하게 설정된 것은 회원국가들과 달리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개념 정의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캐나다의 '예술인지위법' (1992)

유네스코의 권고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예술인의 지위 및 예술인과 제작자의 업무관계에 관한 법률', 일명 '예술인 지위 법(Status of the Artist Act)' 은 제1부 총칙(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선언 및 정책,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캐나다위원회)과 제2부 업무 관계(캐나다 예술인·제작자 업무관계 재정(裁定)위원회, 예술협회의 인가·교섭 및 기본협약, 금지와 보상 등)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선언적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법률안의 대부분은 예술인과 제작자 사이의 업무관계를 다루고 있는 제2부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법은 예술인이라고 하는 특수직업인(특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6조 (2)항 (b)

- (가) (캐나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 연극, 저술(문학) 또는 음악 작품의 저자, 또는 시청각작품의 전체 감독을 맡은 연출가
- (나) 음악, 저술(문학), 연극에서 또는 서커스, 연예, 마임, 인형극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주하고, 노래하고, 낭송하고, 감독하거나 연기하는 자
- (다) 공연예술, 음악, 무용 및 연예 오락,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비디오,

레코드, 상업적 디빙이나 녹음, 미술과 공예, 또는 시각예술에서 어떤 형태이든 작품의 창조에 기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적 범주에 해당하는 자 <http://laws.justice.gc.ca/en/s-19.6/text.html>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 법'에서는 노동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인만큼 유네스코의 '권고' (1980)보다는 구체화된 규정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예술 작품 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녹음 관련 종사자 중 작품의 창조에 기여하는 자를 포괄하고, 공예작가와 낭송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예술인의 외연을 대중예술 또는 미디어예술로까지 확대하여 수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법의 제18조 (b)에서는 독립적인 사업자(예술인)로서 "(가) 그 작품을 창작 앞에 전시 또는 제시하는 행위로 일정한 지분을 받고 있으며, 다른 예술인에 의해 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자, (나) 예술계의 관행에 따라 예술인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 (다) 예술인들의 협회에 구성원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정책을 한 국가 내에서 법제화할 경우 직업적 경력의 산정 및 인정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그 경우 예술인의 전체 생활에서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시간의 투입량이나 그 결과 연계된 소득의 양, 창작된 작품이나 전시 및 공연활동의 양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3)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1)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1975년 12월 31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감영,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가

있지만 하나의 사례로 1975년의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법률 명칭에 나온 8장르의 예술인으로 되어 있다.

• 제5장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정책을 한 국가 내에서 법제화할 경우 직업적 경력의 산정 및 인정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그 경우 예술인의 전체 생활에서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시간의 투입량이나 그 결과 연계된 소득의 양, 창작된 작품이나 전시 및 공연활동의 양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L.613-1조 :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는 사회보험을 위해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임금 생활자와 같은 조건 하에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는다.

가입은 사회보장기구들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권위 있는 기관이나 해당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는 예술가 노동조합과 전문가 단체의 대표자들을 다수로 하여 전문 기구에 의해 구성되며, 해당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사회문화관광위원회, 2005.3), p.105~106.

8장르의 예술작품은 생산하는 예술인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가입 자격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10장르와 비교할 때, 국악과 건축, 사진, 연예가 없고, 대신 시청각예술, 그래픽, 조형예술이 들어 있다.

(2)앵떼르미땅 제도와 적용 대상

1969년 도입된 앵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제도는 실업과 취업을 단속적으로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공연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예술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예술창작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중 507시간(8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할 경우 약 3개월) 이상 유급으로 노동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앵떼르미땅의 지위를 인정받아 일이 없는 시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대상은 배우, 연주자, 가수, 연출자, 영화감독, 기획자, 편집인, 음향 및 조명 기술자, 무대제작자, 소품기획자, 미용사, 분장사 등 공연, 영화, 방송 관련 모든 종사자 등이다. 복수정, 프랑스의 앵떼르미땅(공연예술 비정규직) 제도 소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np.org>) 분야에 있어서는 미술이나 문학을 제외한 공연예술과 영화, 방송 분야에 제한하는 대신, 예술 작품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예술인 외에도 관련 분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예술인 + 관련 종사자”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술인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제도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이 제도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단속적 노동을 하는 공연 예술가들의 노동자적 지위를 정책적으로 규정(예를 들면 연간 507시간 노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은 과제

예술인의 사전적 의미 규정은 명료하나 현실의 제도 속에서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의 예술인들은 그들 자신을



공적 지원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객관화된 기준만이 예술인이니 예술을 규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전업예술인과 겸업예술인의 관계, 프로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의 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으며, 예술인 정책의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개념과 그 범위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의하는 데 직업이나 경력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예술인으로 불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예술가는 그냥 예술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예술인은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시도하게 되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공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형태의 ‘경력 입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캐나다의 사례처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되거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예술인의 개념 정의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과거 식민지시대나 권위주의시대의 통제제도 박영성,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통제정책, 『문화정책논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243~264처럼 예술인에 대한 통제 목적의 공적 자격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적 지원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할 만한 주요 기준으로는 일반 공중에 의한 예술인으로서의 평판, 다른 예술인에 의한 인정, 예술적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 예술 활동에서 얻게 되는 소득의 양,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 예술 관련 전문단체의 가입 유무, 스스로의 예술인 의식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객관화된 기준만이 예술인이니 예술을 규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전업예술인과 겸업예술인의 관계, 프로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의 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으며, 예술인 정책의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개념과 그 범위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이 우리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정책’이 구체화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인의 개념 정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